

—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년 12월 20일

나. 제안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0년 12월 20일

라. 상정일자 : 2000년 12월 22일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천 동 성

나. 제안이유

- 현행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년차적 현실화.
- '99. 4월 국무총리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연도별 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를 확정
- 2000. 3. 22.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계 물의날 기념식에서 물 절약 및 물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요관리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물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 '99. 7월 및 2000. 12. 수자원공사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재원 확보 및 기채상환 재원확보
-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 및 구경별 요금제도 도입 물 절약 생활화 유도

- 노후관 교체, 시설확장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 기채 상환 재원 확보

다. 주요내용

- 상수도요금의 조정 : 현행 요금수준에서 평균 22.8% 인상 조정
 - ※ 생활용수 31.1%, 공업용수 12.6%
- 구경별 정액요금 :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 중수도 설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요금 감면 등 규정
- 가압료의 부과근거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에 규정한 대상자에 요금 감면
- 자동이체에 의한 요금 감면
- 부정수도 적발에 대한 요금 포상금 지급기준 설정
- 상수도 시설물 훼손에 따른 부과근거

라. 참고사항

- 수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51조, 제54조, 제61조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조정), 공기업법시행령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2조
- 지방재정법 제84조
- 지방세법 제19조,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제3장 체납처분
-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의결(2000. 11. 29)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최 윤 구

- 이 개정조례안은 99. 9. 7일 개정된 상수도법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 재원확보와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공기업회계의 독립채산성을 유지함으로써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현행 요금수준에서 평균요금을 **톤당 306원에서 377원으로 인상**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사항임.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 재원확보등에 따른 요금결정의 불가피성, 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물소비 절약 생활화로 부수적으로 연계될 환경의 보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망됨.

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 의결

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겸업종 가구분할을 적용한다. 겸업종 가구분할의 인정은 제32조제5항의 각호와 같다.

제31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을 합산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2조 (사용량의 인정) ①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피할 수 없을 때

②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등의 적용 효율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의하여 산정 한다. 단,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5항의 2가구 및 2호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실제 거주사용 하는 자를 말한다.

⑤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월 사용량이 영업용 또는 업무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세제급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급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